25년 6월 · 26~30번 · 독서(사회·법)

대리제도와 표현대리

대리권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경우, 대리행위를 믿은 상대방의 보호

PASSAGE 지문 · 변형문제 15제

토지를 구매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상대방과 거래를 하기가 어렵다면, 민법에서 규정하는 대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대리제도'란, 본인*을 대리할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본인 대신에 법률행위를 하고, 그때 발생하는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A가 집을 지을 땅을 사달라고 B 에게 위임장을 써 주면, B 는 A 의 대리인이 되어 A 의 이름으로 계약의 상대방인 C 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A 는 매매계약의 본인으로서 C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고 토지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와 같이 대리인이 행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그가 대리한 본인에게 미치게 하려면 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할 권한인 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대리권의 범위에서 대리행위를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서에 'A 의 대리인 B'라고 기재하는 것과 같이 상대방에게 대리행위에서의 본인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한다.

그런데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행위를 하거나,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가진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무권대리'라고 한다. 원칙적으로는 무권대리행위의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하지 않으며, 본인의 이름으로 한 법률행위이므로 대리인에게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은 거래가 성립하지 않음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된다.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리권의 수여나 그 범위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었던 상대방에게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한다면, 대리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이익을 조정하여, 대리행위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표현대리를 규정하고 있다. '표현대리'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이에 본인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무권대리행위의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이다. ㉠표현대리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상대방이 부주의하여 이를 알지 못했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본인은 대리인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민법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첫째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로, 본인인 A 가 실제로는 B 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으면서 B 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C 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C 가 B 를 A 의 대리인으로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B 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A 의 행동 때문에 만들어졌으므로 A 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둘째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 대리인이 자신이 가진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B 가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대리권을 가졌음에도, C 에게 토지를 파는 대리행위를 하였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때 대리인이 실제로 가진 대리권을 '기

본대리권'이라고 하는데,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행위가 표현대리로 인정되지 않아도 기본대리권의 범위에서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특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해당 대리행위 당시에 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는 것과 같이,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야 성립한다. 셋째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이전까지는 있었던 대리권이 대리행위를 할 때에 이미 소멸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본인인 A가 사망하여 B 의 대리권이 소멸했다는 것을 C 는 쉽게 알 수 없으며, 대리권의 외관이 정리되지 않은 것에 A 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단, 이때 상대방은 대리권이 소멸하기 전에 대리인과 거래한 경험이 있어서 여전히 그에게 대리권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정이 있어야 한다.

한편 무권대리행위는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아도 본인이 추인*을 하면 처음부터 정당한 대리권이 있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가 생긴다.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한 경우에 무권대리행위를 행한 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때에도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상대방이 부주의하여 이를 알지 못했다면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본인: 대리제도에서 대리인이 대리하는 사람.
* 외관: 보기에만 그러할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아니한 겉모습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
* 추인: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효력이 생기게 하는 의사 표시.

문항 정답과 해설은 책 뒤 ANSWER에서 확인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대리인이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대리인과 본인에게 함께 귀속된다.
② 무권대리행위의 법률효과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에게 발생한다.
③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아도 본인이 책임을 진다.
④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정당한 대리권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춘 경우에만 성립한다.

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리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치려면 대리인은 대리권의 범위에서 대리행위를 해야 한다.
② 표현대리는 무권대리행위를 한 대리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③ 대리인은 상대방에게 대리행위에서의 본인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한다.
④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그 범위를 넘어서 한 대리행위도 무권대리에 해당한다.
⑤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은 거래가 성립하지 않아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3.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제도가 도입된 역사적 배경을 시대순으로 서술하고 있다.
② 대리제도에 대한 학자들의 상반된 견해를 비교하고 있다.
③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법률 개념이 적용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④ 통계 자료를 근거로 제도의 실제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⑤ 제도의 한계를 지적한 뒤 이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4.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①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② 무권대리행위의 법률효과가 대리인에게도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이란 무엇인가?
④ 대리제도에서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과 법률효과를 받는 사람은 각각 누구인가?
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서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5. 표현대리의 세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있는 듯한 외관이 본인의 행동으로 만들어진 경우이다.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대리인에게 실제로 가진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서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와 다르다.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기본대리권의 범위에서도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④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대리행위 당시에 대리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이다.
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소멸 전에 대리인과 거래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6.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리권을 수여한 본인을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②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까지 본인의 이익을 희생하여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이다.
③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면 무권대리인이 대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이다.
④ 상대방이 부주의했더라도 표현대리를 주장하기만 하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취지이다.
⑤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없어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7. 윗글의 5문단을 바탕으로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본인의 추인을 받은 경우에도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② 무권대리인이 계약을 이행할지 손해를 배상할지는 무권대리인이 선택한다.
③ 대리권이 없음을 상대방이 알았더라도 무권대리인은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④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고 추인도 받지 못하면,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⑤ 상대방이 부주의하여 대리권이 없음을 몰랐다면 본인이 대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8.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표현대리 제도는 무권대리로 인한 손해를 본인과 상대방 중 누가 부담할지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② 본인이 대리권의 외관이 생기는 데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어렵다.
③ 대리인이 본인을 밝히지 않고 계약하면 대리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④ 대리권 소멸 후에 대리인과 처음 거래한 상대방이라면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상대방은 본인과 무권대리인 모두에게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9. <보기>의 (가)~(다)에 해당하는 표현대리의 유형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단, 표현대리의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었다.)

보 기

(가) 갑은 을에게 자신의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오라는 대리권을 주었는데, 을은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에게 자동차를 팔았다.
(나) 갑은 을에게 대리권을 주지 않았으면서도 병에게 을이 자신의 대리인이라고 알렸고, 병은 이를 믿고 을과 계약하였다.
(다) 갑에게서 대리권을 받았던 을은 갑이 사망한 뒤에 갑을 대리하여, 갑의 생전에도 을과 거래한 적이 있는 병과 계약하였다.

ㄱ.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ㄷ.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① (가)-ㄴ, (나)-ㄱ, (다)-ㄷ
② (가)-ㄴ, (나)-ㄷ, (다)-ㄱ
③ (가)-ㄱ, (나)-ㄴ, (다)-ㄷ
④ (가)-ㄱ, (나)-ㄷ, (다)-ㄴ
⑤ (가)-ㄷ, (나)-ㄴ, (다)-ㄱ

1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은 을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려 오라는 위임장을 써 주었다. 그런데 을은 갑의 대리인이라며 병에게 그 아파트를 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당시 을은 아파트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고 있었고, 병은 을에게 매매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알 수도 없었다.

① 을이 가진 기본대리권은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일에 관한 대리권이다.
② 을이 병과 맺은 매매계약은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 무권대리행위이다.
③ 병은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으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④ 병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갑이 매매계약을 추인하면 계약의 효력은 갑에게 미친다.
⑤ 병이 표현대리를 주장하면 매매계약의 법률효과는 갑이 아닌 을에게 귀속된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정은 무에게 어떤 대리권도 준 적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무를 자신의 대리인이라고 알린 적도 없다. 그런데 무는 정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기에게 정의 그림을 파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단, 무는 이전에 정의 대리인이었던 적이 없다.)

① 무의 대리행위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해당한다.
② 정이 추인하지 않더라도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정에게 발생한다.
③ 정이 추인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정당한 대리권에 의해 체결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④ 정이 추인하지 않으면 기는 정에게 계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⑤ 기가 무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기는 무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판단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가) A는 B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으면서도 C에게 'B가 내 대리인이다.'라는 편지를 보냈다. C는 이를 믿고 B와 계약하였다. (단, C는 B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부주의도 없었다.)
(나) D는 E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으면서도 F에게 'E가 내 대리인이다.'라고 알렸다. 그런데 F는 계약 전에 E로부터 사실은 대리권이 없다는 말을 직접 들었으면서도 E와 계약하였다.

① (가)에서 B는 A로부터 기본대리권을 받은 상태이다.
② (가)에서 C가 표현대리를 주장하면 계약의 법률효과는 A에게 귀속된다.
③ (나)에서 F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④ (나)에서 D가 추인하더라도 계약은 D에게 효력이 없다.
⑤ (나)에서 D가 추인하지 않으면 E는 F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13. **<보기>는 민법의 일부 조항을 이해하기 쉽게 고쳐 쓴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제3자에게 타인에게 대리권을 주었다고 표시한 사람은, 그 대리권의 범위에서 타인과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 다만 제3자가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 대리인이 그 권한 밖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본인이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
㉰ 대리권이 소멸했다는 것을 선의의 제3자에게 내세우지 못한다. 다만 제3자가 부주의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 선의: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함

① ㉮의 '제3자'는 윗글 1문단의 예에서 계약의 상대방인 C의 위치에 해당하겠군.
② ㉮의 단서는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부주의로 몰랐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통하겠군.
③ ㉯의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의 예로 대리행위 당시 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춘 경우를 들 수 있겠군.
④ ㉰의 '선의의 제3자'는 대리권이 소멸한 사실을 알면서도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을 가리키겠군.
⑤ ㉮와 ㉯에서 본인이 '책임이 있다'는 것은 무권대리행위의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군.

14.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하락할
② 낙하할
③ 분리될
④ 탈락할
⑤ 결핍될

15. **윗글에 쓰인 단어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귀속(歸屬): 재산이나 권리 따위가 특정 주체에 붙거나 딸림
② 통지(通知): 기별을 보내어 알게 함
③ 오인(誤認): 잘못 보거나 잘못 생각함
④ 소멸(消滅): 사라져 없어짐
⑤ 추인(追認): 앞으로 할 법률행위를 미리 허락하는 의사 표시